

업무용 시설 임대차 계약(FAQ)

1. 업무용시설이란?

- 국가기관, 항공사, 면세 및 일반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, 창고, 카운터 등의 시설을 뜻합니다. ※영업행위를 위한 시설은 상업시설로 분류

2. 임대차 계약 기간 및 임대료 청구

- 업무용시설 임대차계약은 매 2년단위로 진행
- 임대료는 매년 산정되는 연도별 임대단가에 따라 청구
※2년 계약 중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임대료가 상이할 수 있음

3. 계약의 변경 및 해지

- 계약변경 및 해지 요청
(터미널/탑승동/교통센터) 운영기획팀 032-741-2402~3
(그 외 부대건물) 수입총괄팀 032-741-2323 또는 2372

4. 납부기한 및 연체료 발생

-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임대료가 미납될 경우
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완납일까지 미납액의 월 1.3%에 상응하는 연체가산금 부과
※임대료 납부기한 : (정기청구) 해당 월 25일까지 / (비정기청구)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

5. 입주준비 & 원상회복 기간 및 해당기간 임대료 및 기본관리비 부과 여부

- (입주준비기간) 계약 개시일 이전 7일,
입주지원팀과 입주 현장 확인 후 '입주준비/집기반입 등의 목적'으로 임대공간 출입 가능
- (원상회복기간) 19.11.7이전 계약건 7일/ 19.11.7이후 계약건 10일
※ 해당기간 중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부과되지 않음

6. 임대보증금 납부 및 반환시 세금계산서, 청구서, 연체료 등 부과 여부

-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/청구서 미발행 & 연체가산금 없음
- 다만,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금액 명시, 반환시 공문으로 반환 여부 증빙 가능

7. 청구서 확인 방법(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)

- 인터넷 청구시스템(ebpp.airport.kr)에 접속 - 회원가입(고객번호, 가상계좌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필요) - 로그인 -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내용 상시 조회 및 출력 가능

8. 임대료 미납 시 임대차계약 지속 여부

-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시 또는 연체금 총액이 임대보증금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
- 위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, 유의 필요

※상기 내용 및 기타사항 문의 : (수입총괄팀) 032-741-2323, 2372